사 규 번 호	60-7-1
관 리 부 서	Supplier Partnership
등 급	일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지침

Samyang Foods

[규정 제·개정 내역]

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담 당 자
2021.08.03.	제정		감사팀
2026.10.01.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대상 외	Supplier Partnership

[규정 번호: 60-7-1 / 관리 부서 : Supplier Partnership]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지침

2021. 08. 03. 제정

2026. 10.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삼양식품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삼양식품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 책임과 권한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한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구매본부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하도급 거래 관련 유관 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간사는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며, 회의 소집 지원, 안건 접수 및 관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심의 결과 관리 및 기타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심의·의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전년도 거래금액 100억원(연간)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2)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전년도 거래금액 100억원(연간)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여야 한다.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5) 내부 심의위원회는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포함한 공정거래협약 4대 실천사항 변경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마. 심의결과 통보 및 보관

(1)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서명을 받는다.

(2) 내부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문서를 심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유관부서에 공유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내부 심의위원회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제3조 (규정 위반 시 조치)

삼양식품 소속 임직원은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